



조류인플루엔자 방역실시요령

[시행 2018. 12. 10.] [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18-95호, 2018. 12. 1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제·개정 이유

- 최근 개정(18.11.23)된 「조류인플루엔자 방역실시요령」 중 방역지역 내 가금의 알에 대한 소독 등 처리방법 개정
 - 식용란에 대한 소독 방법이 종란과 동일하게 '포름알데하이드 훈증 소독'으로 규정되어 있어 식품 안전 우려 상 개정 필요

◇ 주요내용

- 고병원성 AI 발생 시 관리·보호지역 내 종란과 식용란에 대한 소독 등 처리방법을 개정
 - 종란의 경우 현행과 동일하게 '포름알데하이드 훈증 소독' 실시, 식용란의 경우 개정(11.23) 전과 동일하게 AI 바이러스 사멸조건으로 가공된 경우 반출 허용

【제정·개정문】

제22조(관리지역·보호지역의 방역) ① 시장·군수는 관리지역과 보호지역을 설정하는 때에는 해당지역의 축산업 형태, 지형적 여건, 야생조수류 서식실태, 계절적 요인 또는 역학적 특성 등 위험도(별표9)를 감안하여 시·도 가축방역심의회 위원, 시·도 관계관 및 시·군 관계관과 협의를 거쳐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방역상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검역본부장은 방역지역의 조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는 관리지역과 보호지역 안의 적용대상 동물의 소유자에게 환축의 발생사실이 공표된 날부터 2일내에 전화 등을 통한 예찰을 완료하고, 이동제한 해제 시까지 주기적으로 전화 등을 통한 예찰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의 관리지역·보호지역에 대한 방역조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모든 적용대상 동물에 대한 농장 밖으로의 이동금지 및 보호지역 밖의 적용대상 동물에 대한 보호지역 안으로의 반입금지. 다만, 정밀검사 결과 음성으로 확인된 가금과 돼지에



대하여는 가축방역관의 지도·감독하에 가장 가까운 지정 도축장으로 출하 허용

2. 닭·오리 부화장의 폐쇄 및 보관중인 닭·오리의 부화란 폐기. 다만, 보호지역 내 닭 부화장의 경우 위험도평가 후 가축방역관 지도·감독하에 종란의 입고, 부화 및 병아리 반출 허용.

※ 위험도평가는 임상예찰, 정밀검사 및 관리 계획 등을 포함하며,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반출 시 해당 시도 밖으로는 반출하지 못함

3. 관리지역 내 오리 도축장은 폐쇄. 닭 도축장과 보호지역 내 오리 도축장은 출하전 검사결과 음성인 방역대내에 있는 가금에 대하여만 도축 및 그 생산물 반출 허용. 다만, 관리지역과 보호지역의 전체 가금농장에 대해 검사를 실시하여 음성이고 가축방역관이 안전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해 방역대외에 있는 가금에 대하여도 검사실시 후 음성이면 도축 및 그 생산물 반출 허용
4. 닭·오리 등 적용대상 동물의 분뇨는 농장내 매몰 또는 축사내 보관하되, 산란계의 경우 농장내 이동은 허용하고 농장 밖으로의 반출은 금지. 다만, 닭의 분뇨는 바이러스 검사 결과 음성인 경우 가축방역관의 지도·감독 하에 검역본부장으로부터 보호지역 또는 예찰지역 내 공동처리장으로 이동을 승인 받은 경우에는 이동 허용
5. 닭·오리의 종란 및 식용란은 폐기하되, 보호지역의 닭 종란과 식용란은 정밀검사 결과 이상이 없는 경우 가축방역관의 지도·감독하에 닭 종란의 경우 포름알데하이드 훈증 소독 실시 후 해당 시·도 내 반출 허용, 식용란은 AI 바이러스 사멸조건으로 가공된 경우 반출 허용
6. 사료·갈짚·왕겨는 농장 밖으로 반출을 금지하고 관리지역과 보호지역 안에서만 운행하는 사료전용차량을 이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사료의 농장내 반입
7. 축사 내·외부, 출입구, 농장주변 도로에 대한 주기적인 소독실시
8. 감수성 동물·생산물·사료·동물약품·왕겨 등을 운반하는 차량의 경우 차량외부·바닥·바퀴·운전석 등 소독후 통행허용. 다만, 닭·오리 등 감수성 가축의 분뇨 운반차량은 통행을 금지하되, 검역본부장으로부터 보호지역내 공동처리장으로 이동을 승인 받은 산란계 분뇨 운반차량은 허용
9. 사람에게 대하여는 이동통제초소 및 가금류 사육농장 출입시 신발 및 손 소독후 통행허용
10. 관리지역내 사료공장의 원료·사료는 이동제한 조치하고, 바이러스 검사 결과 양성이거나



나 가축방역심의회의의 협의 결과 폐기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폐기

11. 보호지역내 사료공장의 원료·사료는 이동제한 조치하되, 위험도 평가 후 가축방역관의 지도·감독하에 생산 및 유통 허용

※ 가금용 사료는 검역본부 담당관이 직접 점검 후 생산 및 유통 허용

12. 닭·오리의 분뇨로 유기질비료를 생산하는 시설은 폐쇄

13. 발생지 또는 관리지역 안에서 사육되고 있는 돼지와 발생농장의 적용대상 동물 또는 오염된 생산물을 급여하는 등 역학적으로 관련성이 있는 적용대상 동물에 대하여 정밀검사를 실시한다. 이 경우 정밀검사는 2주 간격으로 2회 실시하여 항원 양성인 동물에 대하여는 살처분을 실시하고, 항체만 검출되는 경우에는 방역대 해제와 함께 이동제한 해제, 조사·연구 필요시에는 검역본부로 이송 조치

14. 난좌, 왕겨, 깔짚 등을 생산하는 업체의 원료·제품에 대하여 일시 이동제한 및 관련 시설·장비·사람 등에 대한 소독

④ 시장·군수는 다음 각 호의 조치가 모두 끝난 날부터 21일이 경과된 후 보호지역과 관리지역을 예찰지역으로 전환하고 제21조에 따라 방역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마지막 발생농장의 살처분 대상동물에 대한 살처분(발생농장을 중심으로 반경 3킬로미터 내의 농장에서 사육되고 있는 적용대상 동물을 살처분한 때에는 그 동물을 포함한다)
2. 제19조제3항에 따라 발생농장 안의 오염 또는 오염의심 물건에 대한 세척·소독·소각 또는 매몰 조치